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 확보〉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2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3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9
1. 총칙(제1편)	9
2.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편 제1장)	11
3.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제3편 제2장)	21
4. 교육환경의 조성(제3편 제3장)	29
5.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4편 제1장)	55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제4편 제2장)	67
7. 지식경제산업의 진흥(제4편 제3장)	90
8. 의료·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4편 제4장)	181
9. 환경의 보전(제4편 제5장)	200
10.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제4편 제6장)	203
11. 토지의 이용 및 교통·항만 등의 개선(제4편 제7장)	205
12. 보칙(제5편)	2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3. 9.
3. 회 부 일 : 2026.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경우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등).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른 초광역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에 자치·재정·산업·
정주 여건 등 관련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첫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제주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며, 공공
기관 이전·유치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초광역 통합
특별시 등에 대한 특례 확대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 제주자치도의 국가균형발전상 위상을 강화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비 부담 확대, 지역
투자공사 설립,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투자 기반을 확충하는 것임. 아울러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스마트수
산, 그린바이오 등 제주 여건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특구·
전문단지 조성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과 지역전략산

1)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자치분권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권·동남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5극)과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
(3특)를 중심으로 경제권·생활권 및 행정·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말함.

업의 집적을 촉진하려는 것임.

셋째, 제주자치도를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 해상풍력·수상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계통포화 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주민 배당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환경해양 보전 및 지역주민 이익 환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넷째, 인공지능 클러스터,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뱅크 및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 로봇·수소·이차전지·나노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우주 국가산업단지 및 항공우주·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제주에 조성하려는 것임.

다섯째,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주도 평생·직업교육,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성화대학·대학원 및 국립대 지역거점캠퍼스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체계를 참고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연구개발·산학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섯째,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 취약지 및 지역암센터 등을 포

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의 개념을 정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비용·인력 지원, 지방의료원 우선지원, 공공의료재단 설치 및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규정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 및 소득보장 분야의 시범사업과 돌봄특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곱째, 청년의 일자리·주거·문화 기반 확충,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고졸청년 및 미래산업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정주·주거 지원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산업의 인력 부족 및 정주여건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여덟째,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물류·의료·교육·돌봄·기반시설·주거 등을 지원하며,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권한 이양, 해상풍력 관련 항만의 국가 관리연안항 지정 요청 및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국가보조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섬 지역, 전통시장, 모빌리티 및 항만 분야의 생활·경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① 국가균형발전 및 다른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확보, ② 에너지·인공지능·모빌리티·우주항공·그린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 조성, ③ 고등교육·연구

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강화, ④ 공공의료·기본사회·돌봄·청년·외국인 및 섬 주민 지원 확대, ⑤ 공공기관 이전·국가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 이양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 도시의 발전전략과 지역혁신 기능을 함께 갖춘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초광역권 경쟁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에 자치권·재정·산업·정주 여건 관련 특례를 폭넓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인공지능·미래모빌리티·우주항공·관광·해양 및 공공의료·돌봄 분야에서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다른 특별법의 동일·유사 특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 이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계가 추진되고 초광역권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제주지역의 발전기반을 확

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주자치도는 기존 제주도를 기반으로 설치된 특별자치도이자 도서지역인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통합특별시에 관한 특례를 제주자치도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도서성,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법정 목적, 관광·환경·에너지전환 및 산업·인구구조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공공기관 이전, 투자·금융·산업단지, 청정에너지·분산에너지·해상풍력,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우주항공, 농업·수산·해양, 고등교육·연구개발, 공공의료·돌봄·기본사회, 청년·외국인·도서지역 정주 지원, 전통시장·항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및 다른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조항은 지역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일부 조항은 개별법상 사무배분 체계, 국가 전략산업 및 에너지·환경 정책의 추진체계,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출입국·체류 관리체계 및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투자·산업단지·에너지·전력망·인공지능·공공의료·교육·항만·도서

지역·전통시장·청년 및 외국인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전체 재정소요, 지원의 우선순위 및 다른 지역과 일반 시·도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특화발전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개별 특례는 관계 법령 체계, 국가재정 여건, 전국적 기준의 유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발전 특례의 발굴·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특례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하고, 조직·재정 관련 특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자치권과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초광역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제도적 격차 또는 역차별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각 특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제주자치도의 도서성·국제자유도시성 및 산업·정주 여건에 비추어 수용할 필요가 있는 특례와 개별법·국가정책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한 특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특례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제1편)

(1) 국가의 책무(제4조)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²⁾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하는 규정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에서 합리적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주특별법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기본 원칙 및 기준은 통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일반법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형평성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법체계상 적절한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편 제1장)

(1)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제165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³⁾,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⁴⁾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⁵⁾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5조의2(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마련된 투자기업 지원 특례⁶⁾와 동일한 내용을 제주자치도에도 인정함으로써, 제주의 전략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투자지원 수준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내용의 투자기업 지원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시·도와의 보조금 지원 형평성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 대상 지역 확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2)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제165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공공·민간 합작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5조의3(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①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38조7)와 동일한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도입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특별법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①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제도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출자 한도, 타당성 검토, 의회 통제 등 재정 건전성 장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논의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기조가 형성되어 있음.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역시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예정하고 있어,⁹⁾ 개정안은 개별법 및 국가 정책과의 방향성 측면에서 정합성을 갖추고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제2026-655호, 2026.5.19.)

1.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47조의2 제4항)

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안 제47조의2 제8항, 제62조 제2항 제1호)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3) 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제165조의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제주자치도 내 우선 설치를 지원하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5조의4(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70조¹⁰⁾와 동일한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도입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의 벤처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의 정책금융·지역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등 현행 법체계상 지방공사 또는

10)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설립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일반법상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¹¹⁾¹²⁾

따라서 제1항은 문언상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곧바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타당성 심사 절차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 일반법 체계 안에서 설립 근거를 보장하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큼.

이러한 점에서 제1항은 실질적인 절차 특례라기보다는 개별 일반법상 가능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개정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임.

제2항은 정부에 대하여 지역투자공사의 제주 내 우선 설치 지원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가 지역투자공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불

1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명하고,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 역시 다소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의 재량과 역할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조문은 향후 다른 시·도의 유사한 입법 요구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제165조의5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점용허가, 토지·시설 매입업무 대행,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개량·보강 비용 지원,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통행료 감면 비용 지원,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시설 매수업무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5조의5(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4.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도로·철도·항만·환경시설·교육·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신설·증설·개량·운영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부대사업의 범위와 허용 요건,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각종

재산·규제 측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제165조의5는 이러한 민간투자법 체계를 전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23조¹⁴⁾와 동일한 특례를 두어, 제주에서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을 열거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제주가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국가 재원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건설·운영하는 민자도로의 시설비나 통행료 감면 비용 등을 국가 재정으로 보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 개정 실익이 적고 신중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4.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바,¹⁵⁾ 통행료 감면 비용 지원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제1항제4호 및 제6호 삭제 의견

3.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제3편 제2장)

(1)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제197조)

개정안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 신설과 관련하여,¹⁶⁾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 특례, 체류자격 완화 및 특별체류자격 부여 등 출입국·체류상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u>관광·통과</u>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 <u>관광·교육·연구·통과</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u>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신설>	⑤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기

16) 동 개정안 제234조의2부터 제234조의14까지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신설 관련 규정임.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관련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제197조는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교육·연구” 목적을 추가하고 제주과기원 관련 외국인에 대한 별도 체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정착을 지원하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출입국·체류 관리의 기본원칙 및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교육·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무사증 입국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안 제1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¹⁷⁾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외국인의

1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장기 교육·연구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체류자격¹⁸⁾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학생비자(D-2)와 연수비자(D-4)는 학위과정·비학위 연수 등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여 입학허가서 등 증빙을 바탕으로 체류 목적, 기간,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제주 무사증 제도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전제로 관광·통과 등 일시적 방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특례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교육·연구 목적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경우 사전 비자 심사 제도와 단기 무사증 입국 제도 간 기능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4항은 제주과기원 소속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입국절차 및 체류자격 완화 특례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제주과기원 설립사업의 내용, 인원 규모,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장기체류에 관한 포괄적 특례를 선제적으로 마

18) D-2 유학, D-4 일반연수, E-계열 연구·교수 비자 등

구분	사증 유형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 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중 발체

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안 제5항은 제주과기원 졸업 외국인에 대하여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의 부여·변경 권한을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두고 있는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류자격 부여에 준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해당 특례는 법률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특정 지역·기관의 졸업자에 대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게 국내 대학·연구기관을 졸업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지역·기관 간 불평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대학·연구기관이 유사한 특례 도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증 발급·체류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 관련 특례에 대하여, 제주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 「출입국관리법」 체계와의 법적 정합성, 장기 체류 확대에 따른 사회·재정적 부담, 타 지역·기관과의 형평성 등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제210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농어업·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정착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의무, 기숙사·공동숙소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사증·체류·지역특화형 비자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특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0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주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현행	개정안
	<u>간소화</u> 3. 제주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¹⁹⁾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 제주자치도의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통합특별시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은 농어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공동숙소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숙소 문제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 체계나 보조비율 기준·상한 등까지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제2항의 취지가 제주자치도의 재정지원 근거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다른 법령을 배제하는 표현을 들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제3항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자격 요건 완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증·체류, 계절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등 출입국관리의 핵심 제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면서도 특례의 대상·범위·상한 등에 관한 기준을 두지 않아 규율 범위가 넓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1호는 현행 전북특별법 제63조²⁰⁾와 같이 조정 가능한 항목과 상

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
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호의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는 법정 지구 또는 산업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5.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4. 교육환경의 조성(제3편 제3장)

(1) 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제220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0조의2(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그리고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은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영역에 해당하며,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같은 내용의 입법²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제220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0조의3(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제15조는 지방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의 고교·지방대학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 구분·선발비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 체계 하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결합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도조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입법례²³⁾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촉진하는 특례로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4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220조의4 신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제1항), 제주자치도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0조의4(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²⁴⁾ 정책은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자체 - 대학 -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는 권역별 산업·경제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5극·3특 인재전략을 RISE에 도입하고 있음.²⁵⁾

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지역 인재·지역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지원 체계임.

25) 교육부 보도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2024.12.27.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 법령 및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주특별법 차원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입법례²⁶⁾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서도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특례로서 수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220조의5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자치도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지사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0조의5(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

(주요내용)

- 17개 시도가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를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을 대학과 협력하여 수립
- 지역의 라이즈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라이즈 지원 전략’ 확정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최근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학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입법례²⁷⁾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 있는 특례로 보임.

(5) 특성화대학 지정 등(제220조의6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제주자치도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대학(원)이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0조의6(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자치도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거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입법례²⁸⁾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특례
(제220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과 제주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 맞춤형 고용지원, 인식개선, 경력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0조의7(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② 도지사는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현행	개정안
	2. <u>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u> 3. <u>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u> 4. <u>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u>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제주자치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u>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u> 2. <u>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u> 3. <u>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u> 4. <u>제주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u> 5. <u>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원</u> ⑤ <u>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u> ⑥ <u>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1. <u>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u> 2. <u>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u> 3. <u>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u> 4. <u>고등학교와 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u>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관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유도하고 있으며,²⁹⁾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40조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역 정착과 인재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안 제2항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에서 “소외된 지역”의 범위 또는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정책 대상을 제주자치도 내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려는 취지라면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주자치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면 해당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1항제1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³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괄하므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별도로 열거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중복될

2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소지가 있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에 중복하여 열거하기보다 제1항의 정책 수립·시행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7) 국립대학교 지역거점 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220조의8 신설)

개정안은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구·실증·산학협력 운영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산·해양 분야 현장실습·시험·실증·재교육을 위하여 어장·양식장·항만·연안·해양보호구역 등을 활용할 때에는 「수산업법」·「어촌·어항법」·「해양환경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0조의8(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

현행	개정안
	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국립대 지역거점캠퍼스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산학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고, 교육부·과기정통부·해양수산부 등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역혁신플랫폼, 해양수산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학 - 연구기관 - 산업 간 연계 및 현장실습·실증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주특별법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반영하여, 제주권 국립대 캠퍼스가 해양·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실증·산학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이 조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동일한 특례³¹⁾를 제주에도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연구 목적의 이

부여함으로써, 해양·수산 등 유사한 산업 기반을 가진 권역들 간에 국립대 거점캠퍼스를 활용한 전략산업 연계·인재양성·실증 연구 기회에서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 정책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8)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220조의9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국제행사 개최, 해외 사절단 운영, 예산 및 지원인력 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제주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취업연계 보조금, 거주·생활시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0조의9(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u>국가는 제주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 1. <u>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u> 2. <u>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u>

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운영</u>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³²⁾를 준용한 것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은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해외인재 확보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제1항은 국가가 “제주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다른 시·도보다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될

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지가 있는바, 유사 조문이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³³⁾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조문 제목은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 본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지역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과”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다소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목과 본문 간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9)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제220조의1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 등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된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보유자원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3)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48호), 허영의원·한기호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38호)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0조의10(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³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 산학협력·인재양성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이미 마련하고 있음.

3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연계된 산학협력, 인재양성, 기술이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 취지의 입법례³⁵⁾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특별법 간 정합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협력 선도지구에서의 공동연구·투자 등이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 요건 및 협의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여, 도지사와 공정위 간 협의 시에는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³⁶⁾

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6) 공정거래위원회 수정(안) : 제3항 및 제4항 신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각 호의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동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제3절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첨단 과학기술 연구와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을 설립하고, 운영의 독립성·조직의 자율성, 외국인 중심의 임원·교원·학생 구성, 박사과정 중심 운영, 제주자치도의 정주·재정 지원 및 국유재산 등 각종 특례를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현행	개정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① 제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이 경우 연구원의 유형과 임용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주과기원은 교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와 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

현행	개정안
	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 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활동을 위한 재원 출연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로 본다.

제주과기원 설립은 제주에 과학기술 연구·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첨단 산업 분야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유치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 법체계와 기존 과학기술원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우선, 현재 국내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의 과학기술원이 개별 설립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³⁷⁾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과기원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한정된 고급 이공계 인재, 우수 교원·연구원, 재정지원, 연구 인프라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주에 별도의 과학기술원을 추가 설치해야 할 구체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기존 과기원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화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설립이 과학기술 인력과 연구역량

37) 과학기술원 설립 현황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개교	1971년	1995년	2011년	2009년
근거 법 (제정일)	한국과학기술원법 (1980.12.31.)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8.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3.12.11.)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4.6.)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법체계 측면에서는, 다른 과기원들은 모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개별 설립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제주과기원만 제주특별법에 설립 근거와 광범위한 운영 특례를 함께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입법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과기원 설립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제주특별법에 직접 상세 규정을 두기보다는 다른 과기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지위·조직·재정구조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에는 설립 방향과 기본원칙 정도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임원 및 교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하고, 교원·연구원·학생의 외국인 비율을 각각 전체 인원의 5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기존 과기원 관련 법률에는 이사회 외국인 비율이나 교원·연구원·학생 외국인 비율을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력 구성은 통상 기관의 자율과 실제 인재 수급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국내 과기원들이 외국인 인력 확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직접 높은 외국인 비율을 규정하는 방식은 현실적 인력 수급 여건과 기관

운영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과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³⁸⁾

아울러 이사·감사 및 총장 선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과 교육부장관 “협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과기원법에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와 비교할 때 규율 방식의 차이가 있어,³⁹⁾ 그 이유와 기대효과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학위과정 측면에서, 개정안은 제주과기원에 박사과정만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과기원들은 학사 또는 석·박 연계 구조를 통해 인재를 조기 확보·장기 육성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제주과기원만 박사과정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제주 과학기술 인재양성 전략에서 어떤 차별성과 실효성을 가지는지, 석·박 또는 학·석·박 연계 없이도 안정적인 학생 모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주 지원 특례는 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234조의7은 제주과기원의 교원·연구원 및 가족에 대하여 주거시설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우선 입학 등을 규

38) KAIST의 경우 전체 교원 중 약 19.6%, 전체 학생 중 약 8.4%가 외국인임.(KAIST, 「KAIST 2024 - 2025 International Student Viewbook」, KAIST International Office, 2024(자료 기준 연도))

3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임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총장)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제주 내 다른 대학·연구기관 종사자 및 일반 도민과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구조 역시 다른 과기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특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선행 입법례에서는 출연금⁴⁰⁾, 기금, 국·공유 재산 무상양여 등 기본적인 재정·재산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재정·재산상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비 총액을 포괄출연금 형태로 지급(제234조의9)하고, 별도의 보조금 지급 의무(제234조의10)까지 두고 있어, 기존의 과기원보다 재정지원 수단이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국가가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⁴¹⁾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40)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세부 용도 지정 없이 총장이 자율배분하도록 하는 여구지원 출연금 특례에 대해서는, 다른 과기원·대학·연구기관과의 형평성, 예산법률주의 및 집행책임 확보 측면에서 그 당위성과 보완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종합하면, 제주과기원 설립 특례는 제주에 과학기술 연구·교육 거점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미 4개 과학기술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과학기술원 설립의 필요성, 법적 형식의 적정성, 그리고 외국인 비율, 박사과정 단일 운영, 정주·재정 특례의 수준·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령인구 감소, 타 지역 및 지역대학과의 형평성, 대규모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학기술원 추가 설립은 관계 부처·지역대학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협의를 별도의 개별 설립법 제정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대학 설립 부담, 제주 외 타 지역 및 제주 내 다른 대학·연구기관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4편 제1장)

(1)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제244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취소·변경할 때 「관광진흥법」 제70조제3항⁴²⁾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4조의2(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보도록 하고,⁴³⁾ 관광숙박업 등급, 카지노 허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 관련 각종 조례 위임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의 상당 부분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어, 제주에는 관광정책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자치권과 특례가 반영되어 있음.

42)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③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장에 대하여 관광특구 지정·취소·변경 시 문체부장관 사전협의를 요구하지 않는 동일한 특례를 두고 있음.⁴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미 상당한 관광 관련 특례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관광특구 지정 절차에서도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2)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제256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세제 지원,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6조의2(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8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⁴⁵⁾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틀의 규정을 제주자치도에도 적용하여, 콘텐츠와 관광을

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결합한 대규모 복합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별 조항의 명확성과 실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제2항의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기존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재량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과 이스포츠 경기장·영상 제작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건립 및 국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도지사가 시설을 건립하고 국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항을 구분하여 열거할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단일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제5항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고,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연동하는 내용이나,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에 이미 다양한 조세·입지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제46조의3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 및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제주자치도의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제도 간 연계 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수용 가능성은 있으나, 현행 국토계획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지방세 특례 제도 등에 기 규정된 사항을 재서술하는 조문의 실익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제행사 유치 지원(제256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정부가 G20 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제주자치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6조의3(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제주자치도를 지정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의 경우 대한민국은 2028년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있어 향후 국내 개최지 선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⁴⁶⁾ COP33은 아직 개최국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2025.11.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141>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도 한국 개최를 전제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⁴⁷⁾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행사 유치 가능성을 전제로, 제주자치도를 G20 및 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 후보지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와의 협의·지원 요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정부가 G20 정상회의, 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바,⁴⁸⁾ 제주특별법에 같은 수준의 규정을 두는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주가 국제행사 유치 경쟁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분명히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법문에서는 특정 회차의 국제행사를 명시하기보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및 입법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7) 연합뉴스,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위 ‘국정 과제로 행사 유치 추진해야’”, 2026.4.29.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9085700054>

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

(4)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66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협의’ 절차로 완화하고, 제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근거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6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⁴⁹⁾

4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

그런데 전북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같은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대신 협의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⁵⁰⁾ 제주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권한 이양 및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것은 자치분권 및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2항의 전담기관은 그 기능·조직·운영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규범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북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¹⁾

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66조의3 신설)

개정안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공공기관·국가 출연·출자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6조의3(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는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²⁾

5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특례⁵³⁾와 마찬가지로, 이 권한을 제주에 한하여 협의·승인 병행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입지·수요·인프라 여건을 고려하여 적시에 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지역 특성을 도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의 자율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동일한 특례를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제266조의4 신설)

개정안은 재생이 필요한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문화재생특별회계를 두고,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6조의4(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① 도지사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 신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으로,⁵⁴⁾ 문화재생사업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를 두는 것은 사업 재원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임.

다만, 제1항의 “재생사업”은 과거 산업시설, 군부대 시설, 폐교, 면사무소 등으로 활용되다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 또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

54)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으로 이해되나, 현행 조문에는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1항과 같이 문화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방식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바, 입법기술적으로는 특별회계 계정 신설을 재량규정으로 두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2항은 국가가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 신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계정 신설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⁵⁵⁾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가 지원의 대상을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문화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사업비”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0조(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제4편제2장)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특례(제294조의2 ~ 제294조의6 신설)

개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푸드테크산업 정책 체계 하에서 제주자치도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반영, 혁신클러스터 지정, 실태조사·통계, 지원 권한 이양, 규제개선 요청권 부여 등을 통하여 제주를 푸드테크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동향과 발전 전망 3. 제주자치도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제294조의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현행	개정안
<신설>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제주자치도에 지정할 수 있다. 제294조의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제294조의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제294조의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먼저 제294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 동향 및 발전 전망, 통계, 연구개발, 전문인력,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전략 단계에서부터 제주자치도에 대한 별도 과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조항임.

이를 통하여 제주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조례에 근거한 세부 집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을 제주 미래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294조의3은 푸드테크산업법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제주자치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제주가 농식품·관광·외식·물류 등 기존 강점 산업과 푸드테크를 결합한 테스트베드·실증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은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기업 집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제주 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294조의4는 도지사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푸드테크산업 정책 설계와 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임.

이는 푸드테크산업법에서 규정한 국가 실태조사·통계 체계를 제주자치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제주 실정에 맞는 조사·통계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적절한 측면이 있음.

제294조의5는 푸드테크산업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 권한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제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창업보육·연구개발·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및 산업정책의 현장 밀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94조의6은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법상 규제개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직접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제주 푸드테크 기업·실증사업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중앙 규제심사 시스템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푸드테크산업이 신기술·신서비스를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 절차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 접근권 부여는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실증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6까지는 국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체계 안에서 제주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 혁신클러스터 지정, 실태조사·통계, 지원 권한 이양, 규제개선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선행 입법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⁵⁶⁾과의

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통합특별시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주 푸드테크산업의 자율적·체계적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제294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구감소 및 농촌공간 재생이 필요한 지역 등을 농촌활력촉진특구로 지정하고,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7(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현행 강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농촌활력·공간재생 필요성, 교통접근성 및 민간투자 잠재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요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조례와 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변경·해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법은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 내 농업진흥지

역 해제·농지전용·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특례로 부여하고, 진흥사업에 대한 국가·도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남 광주통합특별법도 유사한 요건과 절차 아래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 관련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

제주특별법에 농촌활력촉진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이러한 선행 입법례와의 형평성·정합성을 확보하고, 제주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적극적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4조의8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제15조⁵⁷⁾에도 불구하고 제주 관할구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육성지구 운영과 관련된 일부 장관 권한을 도

5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4조의8(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농업법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⁵⁸⁾과 마찬가지로 제주에 대해 조성계획 수립·고시

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

및 지구 운영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과 운영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분권적 특례로 보임.

또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시 농업기반시설,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재정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제주 맞춤형 스마트농업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4조의9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도지구에 대해 수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교육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9(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 차원의 스마트수산업 정책 도입은 ICT·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수산양식·유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수산정책 방향과 부합하며,⁵⁹⁾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⁶⁰⁾ 및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과 동일한 구조의 규정을 제주자치도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5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극복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2025.11.05.

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294조의10 신설)

개정안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본도 및 관할 구역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4조의10(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⁶¹⁾ 전북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도서·섬 지역 물류·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바,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는 “섬”을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제주도 본도는 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⁶²⁾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특례 대상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은 개별법상의 섬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제294조의11 신설)

개정안은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고, 전력 판매 수익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 이른바 “바다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및 주민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

6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현행	개정안
	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잘피·염생식물 및 해조류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을 활용하는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해양 탄소흡수력 강화, 민간·지역의 참여 확대 및 신규 블루카본 인증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음.⁶³⁾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안군의 햇빛소득·바람소득 사업은 태양광·풍력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⁶⁴⁾

63) 해양수산부는 2023년 5월 31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블루카본 흡수량을 2030년까지 106만6천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블루카본 흡수량을 2050년 136만2천톤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블루카본: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바다에 사는 종자식물의 일종) 등을 포함함

개정안은 해양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기후·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심사·정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294조의1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풍속·강수량·기온 등 기상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수 설정·요율·재보험·기금 설치 및 보험료 지원, 보험상품 심의·승인 권한 등을 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12(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64) 경향신문,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돌파…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025.10.2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61231001#ENT>

현행	개정안
	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지수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도지사에 제공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 보상형 보험이고, ‘농업재해 지수보험’은 태풍·가뭄·폭염 등 기상재해 시 풍속·강수량·기온 등의 기상지표가 미리 정한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 기반 보험을 의미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품목·지역별 가입률 격차와 피해 인정기준·보상 범위의 한계로 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온·

강수량 등 기상지수를 활용한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필요성이 연구·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⁶⁵⁾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지역의 기상·작물 특성을 반영한 지수보험 시범사업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보험상품 심의·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재해 보장의 신속성과 맞춤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취지의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⁶⁶⁾ 수용 가능성 있는 특례로 보임.

한편, 기상청은 제1항 중 기상기후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상법」 제2조제15호⁶⁷⁾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로 규정할 필

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작물재해보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후·김미북·정우석, 2021.5.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4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의 역할과 정책과제」, 2026.4.6. 프라임경제, “자연재해 보상해 준다는 재해보험, 농가 뿔난 이유”, 2025.07.21.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96987>

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3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67)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생산·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 2026. 9. 18)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8)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제294조의13 신설)

개정안은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스마트농업 정책 체계 하에서, 도지사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형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근거를 두고,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4조의13(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현	행	개	정	안
				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법 및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하여, 단순한 시설 보급을 넘어 스마트농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형 산업과 관련 기업의 창업·연구개발·판로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⁶⁸⁾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제주자치도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작목, 기후, 농업 구조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⁶⁹⁾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68)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은 “스마트농업을 통한 노동력 감소·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와 “기술수준과 연관산업이 향상·발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단순 시설 보급을 넘어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와 연관산업 육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①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②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 육성, ③ K-스마트농업 기술·모델 구축을 위한 R&D 강화, ④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AI를 활용한 서비스형 산업과 관련 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의 디지털 전환을 지역 주도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9)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294조의1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조성 근거와 국가의 계획 반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4조의14(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⁷⁰⁾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에서도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가공·연구개발·유통·수출 기능이 집적된 클러스터 및 거점단지 조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⁷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주에서도 수산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연계된 전문단지 및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며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집적화와 수출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입법 방향으로 보임.

7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1) 권역별 「수산식품 클러스터」,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등 4개소* 추진

* 전남(‘20~’26), 부산(‘22~’28), 전북(‘22~’26), 경북(‘23~’28)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⁷²⁾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산물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제294조의15 신설)

개정안은 은퇴를 앞둔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자체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4조의15(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제주 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제·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기존 노후소득 보장 장치만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⁷³⁾

이에 따라 농업인 노후소득 정책을 보완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농업인 연금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⁷⁴⁾

이러한 정책·연구 흐름을 고려할 때, 제주자치도가 고령 은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이미 동일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73) 경향신문, “가속화하는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올해 농가 인구 ‘100만명대’로 무너지나”, 2025.4.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445001#ENT>

74) 임소영·김수린,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2024.3.25.

고려하면,⁷⁵⁾ 제주특별법에 유사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전환 지원과 관련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지식경제산업의 진흥(제4편 제3장)

(1)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제296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소재 벤처기업·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의 투자·융자·보증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6조의2(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영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및 정책목적형 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운영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국가가 이러한 조합 및 정책목적형 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보증제도의 우대 운영,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국가 R&D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화·후속투자 지원 등을 제주지역 벤처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동일한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⁷⁶⁾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벤처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선행 입법례 및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2)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제296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 내 기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6조의3(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에서
도 기술창업·투자·기업 성장이 이어지는 자생적 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 파크, 딥테크 창업생태계 조성 등 다
양한 지역 창업 거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⁷⁷⁾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
정·운영하고, 국가가 해당 지구 내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⁷⁸⁾

제주특별법에서 도지사가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제주가 지역 특
성을 살린 창업 클러스터와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 지역 특별법과의 제도적 형평성 확보라는
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구·광주·대전·울산에 딥테크 창업생태계 구축”, 2026.5.21.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853>

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제304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⁷⁹⁾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4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

7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현행	개정안
	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⁸⁰⁾는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도지사에게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명시한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장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

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는 동일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⁸¹⁾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제304조의3 신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제주자치도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의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4조의3(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

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도시는 재생에너지⁸²⁾와 분산에너지⁸³⁾ 비중을 확대하여 특정 지역이 자체 생산 전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탄소중립, 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개념으로, 광주·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전력 자립률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⁸⁴⁾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은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⁸⁵⁾

82) 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83) 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8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광주, 시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도시 만든다”, 2021.02.04.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3555#visualNews>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역시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구축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그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⁸⁶⁾ 분산에너지사업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국가지원의 일반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국가 차원의 명시적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제주 지역전략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선언적·정책적 기반을 두려는 취지로 이해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관련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결합한 유사 특례가 마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⁸⁷⁾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도

8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입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자립과 관련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2항이 현행 분산에너지법 및 지능형 전력망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제304조의4 신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따른 해상풍력 예비지구⁸⁸⁾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8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결(같은 법 제6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지사가 지역 산업발전계획, 어업권 손실보상, 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4조의4(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해상풍력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로 규정하면서도,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⁸⁹⁾

한편 제주특별법 제303조는 전기사업법상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주요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일정 규모(2만킬로와트 초과)에 대해서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며,⁹⁰⁾ 조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허가기준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5.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8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제주자치도 내 풍력발전사업은 일반법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특례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해상풍력법에 따른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제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법체계 하에서, “해상풍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04조의4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30조의 특례⁹¹⁾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제주에 해상풍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해상풍력법과 제주특별법 간 권한 구조에 관한 법체계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바, 법 체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제304조의4가 해상풍력법의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법률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⁹²⁾

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제304조의5 신설)

개정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과 어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4조의5(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u>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 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u> ② <u>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u>

현행 제도상 공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⁹²⁾를,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설정 또는 어업허가를 요하

9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 범위)에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로 명시(법 제정시 제주도 요청)

9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며,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충돌하는 경우 관련자들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및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과 어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허용 기준, 대상 해역, 허용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의 조화 및 상생공존을 도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⁹⁴⁾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 및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정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제304조의6 신설)

개정안은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장려·육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기술개발·실증사업·사업화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인허가 절차 합리화 시책 마련,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4조의6(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는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과 주민참여·이익공유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⁹⁵⁾ 및 전북·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8)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제304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제도를 전제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대하여 그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4조의7(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녹지에서는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하되, 이는 해당 녹지의 기능과 조성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⁹⁶⁾

9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숨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완충녹지는 산업단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 각종 영향을 완화하고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를 명시한 것은 완충녹지의 본래 기능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최근에는 산업단지 내 유허공간과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려는 정책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바,⁹⁷⁾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 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기반 확충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⁹⁸⁾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두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97) 머니투데이, “산업단지 규제를 풀었더니…공장 옆 태양광·수직농장 등 활용도 ↑”, 2025.11.30.
<https://www.mt.co.kr/economy/2025/11/30/2025113012524189013>

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4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9)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제304조의8 신설)

제주자치도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에 필요한 시설 구축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배전설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확충된 전력망 이용자에게 망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⁹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4조의8(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주자치도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9) 동일 취지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규정되어 있음.

「전기사업법」상 송전·배전설비의 설치·운영은 송전·배전사업자의 사업영역이며, 현행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용 송전망과 배전망을 주로 구축·운영하고 있음.¹⁰⁰⁾

따라서 개정안 제1항의 행정적 지원이 기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제도와 구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국가·제주자치도·송전·배전사업자 간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의 설비 설치 요청과 국가의 비용지원은 송전·배전사업자의 투자계획 및 전체 전기사용자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통보강의 필요성·경제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수요처 간 비용분담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제4항의 망사용료 역시 기존 송전·배전요금 체계와의 관계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과 부과절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용송전망 구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권한이고, 국가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별도의 행정적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¹⁰¹⁾

100)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10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만일 해당 특례의 취지가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 직접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역할분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추가적 부담 부과의 적정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제304조의9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제주 내 지역에 대하여,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¹⁰²⁾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4조의9(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제주자치도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

102) 동일 취지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6조에 규정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상 전력계통의 운영 및 안정화는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의 기본 책무로 규율되고 있으며, 정부도 제주를 비롯한 계통포화¹⁰³⁾ 지역에 ESS 도입,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 접속 제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계통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추진해 온 바 있음.

특히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수요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출력제한과 계통 접속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전·변전설비 확충과 ESS·계통관리설비 등 계통 유연성 자원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¹⁰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주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국가 차원에서 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종합대책 수립과 재원 확보, 관계 기관·전기사업자와의 협력 추진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입법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03) 어떤 지역의 전력망(송전선·변전소·배전망)이 더 이상 새로운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전기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여유가 거의 없거나 없는 상태

104) 제주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초과발전 대책 및 잉여전력 활용 방안」, 2021.1.

다만, 송전·변전설비 확충과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은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체계에서 전기사업자(주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거래소가 담당하는 분야이고, 정부 역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등에서 이미 관련 정책과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통포화 해소 대책 우선 마련 의무” 및 “대책 추진 재원 확보 및 시행 의무”가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재정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이 한정된 공공자원으로서 「전기사업법」상 차별금지·형평·공정 원칙(망중립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별 특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위해 장거리 송전망 등 주민갈등이 수반되는 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할 경우 투자 비효율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기후부는 송·변전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 제2항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제304조의10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ESS 등)에 대하여, 일반 발전설비와는 별도로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원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4조의10(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제주·전남 등 지역에서는 출력 변동성으로 인하여 계통 주파수·전압 불안정, 출력제어·접속 제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¹⁰⁵⁾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통안정화용 ESS 등 유연성 자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계통안정화 장치는 계통 보조·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써 단순 발전량 판매만으로는 투자비·운영비 회수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아, 민간의 자발적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

105)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계통안정화 대책 시급”, 2023.6.12.

<https://www.koreasca.kr/mobile/design/subpage/community.php?table=UT1642574028&mode=view&id=665>

기되어 왔음.¹⁰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하여 일반 발전설비와 구별되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계통안정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¹⁰⁷⁾ 제주특별법에 유사 규정을 두는 것은 재생에너지 계통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2)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제304조의11 신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공형·주민참여형 사업, 기반시설 설치·유지관리, 교육·홍보, 기술개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보전 등

106) 국회입법조사처,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140호(2020. 5. 30.)

1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 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4조의11(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형·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별회계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 7.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

현행 「지방재정법」 체계상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¹⁰⁸⁾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과 주민환

¹⁰⁸⁾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원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회계 설치 자체는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임.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구조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⁰⁹⁾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는 일정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¹⁰⁾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와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09) 전기저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에너지 대전환 이끌까?”, 2026.2.11.
<https://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6190>

1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9조(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형·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
7.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

(13) 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제304조의12 신설)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주민수용성 제고,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4조의12(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반발과 입지 갈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공공기관 참여와 주민참여형 모델은 이러한 수용성 문제를 완화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음.¹¹¹⁾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¹²⁾ 제주특별법에 유사 규정을 두는 것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11)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2023.1.26.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706/view>

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0조(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제304조의1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 적용을 배제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재정건전성·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두어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4조의13(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① 제주자치도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 신규 투자사업, 사채 발행에 대하여 재정건전성과 사업위험을 고려한 한도 및 타당성 검토 제도를 두고 있으며,¹¹³⁾ 이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도한 부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통제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장기간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한도 규제가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온바, 일정한 범위에서 출자 및 사채발행 한도에 특례를 두어 참여 여력을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¹¹⁴⁾

특히 개정안은 한도를 전면 자율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사업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사채발행 규모에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투자 확대와 재정건전성 통제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특례 설계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이미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¹⁵⁾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공주

113)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14) 파이낸셜뉴스, “지자체 공기업, 태양광·풍력 투자 문턱 낮아진다”, 2026.5.18.
<https://v.daum.net/v/20260518134318270?f=p>

1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① 통합특별시 출자

도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305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동혁신과 공간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2(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모빌리티 미래도시’는 개별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자율주행, UAM, 전기·수소차, 모빌리티 서비스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를 집적·융합한 복합 도시개발·산업클러스터 개념으로 이해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¹¹⁶⁾과 전북·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례를 제주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제주자치도를 모빌리티 미래도시 후보지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도시·교통·에너지·산업정책,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전남광주·전북·강원과의 형평성과 지역 특별법 간 정합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6)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305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관할 내 복수의 산업단지·연구단지·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 클러스터 관련 인허가 협의기한 단축, 통합창구 설치, 재정·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요청의 신속 처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클러스터 형태로 육성하려는 것임.

1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3(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제주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모빌리티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5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¹¹⁷⁾과 전북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제주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2항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지정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대상으로 국가가 규제특례,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 소재 특화도시에 한정된 개별 특례라기보다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제도 전반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는 성격으로 이해됨.¹¹⁸⁾

1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1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

이와 같은 사항은 모법인 모빌리티혁신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보다 타당하고, 제주특별법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제3항은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회신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제1항의 클러스터 지정이 어떠한 개별 법률의 개발사업 등과 연계되는지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인허가 협의기한 단축 및 미회신 시 협의완료 간주를 규정하는 것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인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를 해석으로 보완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므로, 그 범위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5항은 국가로 하여금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항에 따른 클러스터는 도지사의 자체 지정에 기초한 정

· 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책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문이 어떠한 개별 법률상의 지원·규제완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검토 의무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모빌리티 관련 일반법상 제도와의 관계, 특례가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 및 지원·규제개선 제도의 범위, 관계 법령에 대한 우선 적용의 의미와 법적 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북자치도에 적용되는 특례의 대상·요건·절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4 신설)

개정안은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상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4(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현행	개정안
	<u>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u>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위 개별 법률들은 각각 모빌리티 특화도시, 스마트도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신청의 접수, 심의, 특례 부여 등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¹¹⁹⁾ 및 전북·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어, 제주자치도에서도 규제 대응과 실증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이와 같은 권한 위임 특례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규제 신속확인과 특례 신청 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제도의 성격과 운영방식, 권한을 보유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제3호의 「산업융합 촉진법」상 권한 위임에 대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는 개별 기업의 신청을 전제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적 심의를 거쳐 부여하는 제도이고, 지역 단위 규제특례는 이미 「지역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3호의 권한위임 특례에 대해서는 산업융합 규제특례 제도의 운영체계와 기존 지역특구 제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5 신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¹²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구역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5(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특례, 유상 여객·화물 운송 허용 등 각종 규제특례가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구역으로, 국토교

¹²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¹²¹⁾ 제주자치도에도 시범 운행지구 지정 권한과 운영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자율주행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전남광주와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9) 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제305조의6 신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가 산업전환·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1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6(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산업전환·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분야는 다수의 재정사업과 정책수단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영역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가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고 유사 목적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¹²²⁾ 및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1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0)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7 신설)

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5조를 전제로, 제주자치도의 녹색산업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실증화 등에 대하여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7(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실증화·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기보다는, 현행 일반법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제도를 제주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추어 보다 구체화하려는 특례로 보임.

특히 청정대기산업과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분야는 제주가 청정환경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지역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환경·에너지 특성을 반영한 녹색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²³⁾ 제주특별법에 유사 규정을 두는 것은 녹색산업 육성

123)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의 조문 제목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문 내용은 청정대기산업 및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산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목과 내용의 범위를 보다 정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1)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제305조의8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 표준화, 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8(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포함함.¹²⁴⁾

12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그린바이오 연구·실증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표준화, 수집·공유·거래, 플랫폼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정책·표준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지역 단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조문의 구조 및 내용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05조와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¹²⁵⁾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제305조의9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연계하여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공영주차장 등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¹²⁶⁾ 구체적인 설치 위치·수량·기

1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

준은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시설 규모·용도, 안전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하공간 특성상 화재 시 대피 곤란·연소 확대·유독가스 정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보조하거나,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¹²⁷⁾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주자치도 내에서도 지하 충전시설의 안전성 우려와 주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상 이전 수요가 존재할 수 있고, 주민 등에게는 이전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에 관한 유사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¹²⁸⁾ 제주특별법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7) YTN,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이전비 지원 조례 첫 제정”, 2024.09.07.

https://www.ytn.co.kr/_ln/0115_202409071017067412

1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3)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제305조의1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 수소 관련 서비스 보급·활성화,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소산업 분야에 대해 발전 기반 조성,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가 제주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10(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수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국가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²⁹⁾

¹²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수소경제 정책과 별도로, 제주자치도에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포괄적 시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 차원의 수소산업 전략 수립·추진과 중앙정부 지원을 연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의 수소산업 육성·지원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³⁰⁾ 제주특별법에 유사 규정을 두는 것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제305조의11 신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제주자치도의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에너지, 광융합, 해양융합 등 첨단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11(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국가는 제주 자치도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된 국방산업 2.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3.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4.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5. 나노반도체 산업 6. 로봇산업 7. 모빌리티 무선통신·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 9. 세라믹 산업, 첨단·희유소재 산업 10. 인공지능·가상융합산업 11. 코스메틱 산업 12.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3. 삼차원프린팅산업 14. 광융합산업 15. 해양융합산업 16. 5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 17.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현행 법체계상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투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시설, 규제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¹³¹⁾

또한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수소,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³²⁾

따라서 개정안은 전적으로 새로운 지원체계를 창설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제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제주에서도 우주산업, 인공지능,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³³⁾ 국가가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역 산업 다변화와 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¹³⁴⁾ 제주특별법에 유사 규정을 두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133) 제주일보, “‘우주를 날다’...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도전”, 2025.2.11.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386>

인베스트제주, “제주도, 데이터센터 유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박차”, 2025.4.8.

<https://investjeju.or.kr/news/?bmode=view&idx=160893761>

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85조

(25)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305조의12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12(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행 드론법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비행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등 일부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도는 이미 2021년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양·산악·도서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역에서 드론 물류배송, 안전 모니터링, 환경관리, 디지털트윈 구축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지정 연장과 사업 고도화를 통해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와 산업화를 확대하고 있음.¹³⁵⁾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135) 2025년 기준 32개 지방자치단체, 67개 구역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기보다는, 이미 제주에서 운영 중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재지정·연장이나 구역 확대, 신규 사업모델 추가 등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³⁶⁾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두는 것은 드론산업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305조의1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기반시설 및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확충·고도화,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13(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1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8조

현행	개정안
	<u>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인공지능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u> <u>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u> <u>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을 말한다)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u> <u>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u>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u>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산업의 지역적 집적화와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인공지능 정책의 일반적 지원체계에 더하여, 제주 자치도에 연구개발·컴퓨팅 기반시설·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와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 거점·기반시설·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가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확충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¹³⁷⁾

이러한 선행 입법례를 고려하면,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특례를 둘 필요성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은 국가가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의 입지와 투자 규모는 전력·용수·통신망 등 기반여건, 수요 기업·연구기관의 집적도, 기술 변화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

1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동일한 의무규정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를 다른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에도 확대할 경우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의 지역별 배치와 투자 우선순위를 개별 지역 특별법이 선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¹³⁸⁾

따라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제2항 전단의 국가 직접 수행 또는 지원 의무는 재량규정으로 조정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 및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8)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138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27)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제305조의14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및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와 교통·물류·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14(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u>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제주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제주자치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¹³⁹⁾ 정부도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여러 권역에 AI 혁신거점과 데이터센터,

1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¹⁴⁰⁾ 제주 자치도에 대해서도 국가 AI 혁신거점 조성 방향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취지는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8)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15 신설)

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¹⁴¹⁾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국가가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및 데이터센터 구축비 지원 등의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15(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0) 머니투데이, “과기정통부, 지역AX에 3.1조 투입…‘4개 권역 AI 혁신거점으로’”, 2025.12.11.
<https://www.mt.co.kr/tech/2025/12/11/2025121110314681665>

1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적 제도에 더하여, 제주자치도가 조성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한 국가의 지정·전담기관 지정·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집적 및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전략과의 연계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전담기관 지원 등에 관한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¹⁴²⁾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항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선제 구축 특례와 관련하여, 특히 용수공급시설은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 운영이 수반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정확한 수요 산정 없이 구축할 경우 시설의 과다·과소 공급, 재정 비효율 및 유희시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수요 예측에 기초한 단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5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외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9)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305조의16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보아 관련 지원체계를 준용하며,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설치 및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일부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⁴³⁾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16(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2.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1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5조에 유사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지원할 수 있음.¹⁴⁴⁾

제주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바,¹⁴⁵⁾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너지·모빌리티·문화 융합 기술의 실증 거점을 법률로 명시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규제 특례나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설치 특례를 함께 부여하는 것은 제주를 스마트도시형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3항은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특례의 구체적 범위·기간·절차 및 결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임.

14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145)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매우 우수)’을 획득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자율주행 서비스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품질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함.(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코리아 보도자료, 2026.2.20.)

(30)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1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제주자치도 내 특정 지역에서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운영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활용에 관한 관계 기관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17(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

현행	개정안
	<u>한 처리 및 관리</u> 3. <u>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u> 4. <u>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u>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정제·결합·비식별화·품질관리 및 제공에는 전문인력·기술·재원과 함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활용부터 기술개발·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은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제2항에서 국가가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 제3항은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이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자체라기보다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별도의 대규모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제1항의 지역 내에”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도록 한 문언은 제주자치도 내에 독자적인 데이터 관리·활용 거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한 인공지능데이터뱅크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¹⁴⁶⁾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들에 데이터뱅크 시설의 별도 구축 또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의 지역 배치에 관한

1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기대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뱅크의 “지역 내 구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6항은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활용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가 이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 제5항도 같은 법과의 정합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7항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31)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305조의18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우주항공·바이오·헬스·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지정·연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신

청과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18(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및 방위산업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고시되어 있음.¹⁴⁷⁾

그런데 개정안 제2항제1호는 별도의 정의 없이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첨단전략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제1항에서 예시한 모빌리티 및 문화 산업은 현행 산업통상부고시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현행 법체계상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한편, 인공지능·에너지 기반의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입법례가 있고,¹⁴⁸⁾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

147)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7. 10.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15호)

1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정법률안에도 같은 내용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특별법 간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이러한 특례가 전남광주, 제주, 전북, 강원에 공통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국가 전략산업 정책의 중립성 및 다른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32)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제305조의19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이를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¹⁴⁹⁾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19(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① 도지사는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 할 수 있다.

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8조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함.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도입·확산하려는 정책 방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 사업과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 업무 전반의 AI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¹⁵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 효율성 제고, 반복업무 경감, 대민서비스의 신속성·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¹⁾

다만, “에이전틱 인공지능”은 주로 기술·산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일반법상 법적 정의가 정착된 용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기술 발전과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면 법문상 용어는 보다 포괄적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⁵²⁾

1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안부, 180억 원 투입해 공공부문 AI 도입 지원 본격 추진”, 2026.2.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52>

151) 엄석진,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도입과 활용, 사례와 기대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 http://klidwz.or.kr/webzine/vol135/sub_1_2.html

15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33)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305조의20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제주자치도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¹⁵³⁾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20(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① 제주자치도는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 제주자치도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디지털 트윈”을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며,¹⁵⁴⁾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및 관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8조에 동일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15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런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재난·안전, 환경, 교통,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¹⁵⁵⁾

이러한 점에서 주요 정책 결정 전에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과학적·예측적 정책결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의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이라는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규정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액 이상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문언상 예산 100억 원 미만의 정책에 대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사업비 규모가 작더라도 재난·안전, 환경, 복지 등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나,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규범·제도 개편과 같은 사안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정책의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 100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만으로 적용 대상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12.3.)

1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국가자산”, 2021.8.21.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892374&pkgId=49500747&pkgSubId=25000095>

구분하는 것은, 동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디지털 트윈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을 특정 금액 기준으로 법률에 직접 고정하기보다는 정책의 성격, 주민에 대한 영향,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항은 국가 보안망 내에서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일정한 보안조치 아래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은 공공부문이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이해되는바, 민간 거대언어모델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한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예외인지, 그리고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범위 및 효과가 무엇인지가 조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민간 최신 LLM을 국가 보안망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특례”의 내용과 일반 제도와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305조의21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제주 내 특정 지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정된 특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21(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20조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해당 산업의 집적 정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의 전환 수요, 관련 기업·인력·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지·지구·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¹⁵⁶⁾

15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지구·지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동일한 구조로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지정 및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⁵⁷⁾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¹⁵⁸⁾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제주자치도에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입법화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우선 지정과 국가 지원을 통해 제주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전환과 부품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는 법률상 모든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제도인바, 전남광주·전북·제주·강원에 공통적으로 “특화단지 등 우선 지정” 규정을 두는 방식이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입지·지역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하 생략)

1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8)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324호),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38호)

(35)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2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¹⁵⁹⁾에 따른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등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22(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시범운용구역”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운항·인프라·안전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실증·검증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범운용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7조¹⁶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159)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있고, 전북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 이러한 특례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하려는 것임.

이는 도심항공교통법상 지정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우선 지정’이 아닌 ‘우선 검토’ 의무와 국가의 재량 지원 근거만을 추가로 부여하는 형식인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및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의 시범운용구역 지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수용 가능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36)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305조의2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및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국가가 해당 특화단지와 공급망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2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 지정, 공급망센터 지정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¹⁶¹⁾ 정부도 2021년 이후 소부장 특화단지를 순차적으로

16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춘 것

지정·확대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조기경보 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⁶²⁾

이러한 점에서 제주자치도가 관할구역 내 소부장산업을 위하여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정 및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소부장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소부장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장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우선 지정 및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바,¹⁶³⁾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소부장 특화단지 및 공급망센터 유치·지정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62) 뉴스1, “‘소부장 특화단지’ 2030년까지 10→20개 확대, 기업투자 30조 유치”, 2025.10.23.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51600>

1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7)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2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지정된 특화단지 및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산업 관련 기업·기관에 대한 보조금·융자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도지사의 특별기금 설치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수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24(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제주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임.¹⁶⁴⁾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단지 여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집적 정도, 주변 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시·도지사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제3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기업·교육기관 및 지원시설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제도는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별도의 법정 제도임.¹⁶⁵⁾

또한 제3항에 따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우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16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5)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가운데 우주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문상으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 국가산업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즉,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우주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등 상호 다른 법률에 근거한 산업 집적·지원 수단을 하나의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 내 제3항의 지원 대상이 되는 우주 국가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과 각 제도 간 연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1항의 “우선 지정”은 재량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나,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9조¹⁶⁶⁾,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사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

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정안의 입법화가 지역 특별법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및 우주항공청의 정책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병존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8)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05조의25 신설)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¹⁶⁷⁾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5조의25(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7)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는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 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60조¹⁶⁸⁾와 전북·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구조로 통합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 시 우선 지정 및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제주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우선 지정 특례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주산업 분야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및 전북·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산업 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제도인바, 전남광주, 전북, 제주, 강원도 공통적으로 “우선 지정”

1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례를 두는 방식은 우주항공청의 지정 재량이 특정 4개 권역에 편중 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시·도 및 기존 우주산업 거점과의 형평성, 국가 우주산업 입지정책의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주체’는 우주항공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성 주체’를 우주항공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성’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¹⁶⁹⁾

(39)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제305조의26 신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26(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169) 우주항공청은, 투자진흥지구는 우주항공청 및 관련 부처(재경부, 행안부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개정안
	등을 수립할 때 제주자치도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시책과 예산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로봇 관련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자치도의 필요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1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등)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능형로봇법상 기본계획과 재정지원은 전국 단위의 산업정책 및 지원체계 아래 운영되는 제도인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어 제주와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우선 반영” 및 “우선 지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국가 기본계획의 중립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0)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27 신설)

개정안은 제주 내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5조의27(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¹⁷¹⁾ 및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를 준용함으로써, 디지털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4조(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첫째, 제1항과 제2항은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1항에서 국가지원 대상이 되는 “다양한 학문 분야 간 교류·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은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개발 활동이나 사업유형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제2항의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¹⁷²⁾ 중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을 목적으로 특화된 단지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되나, 현행 제주특별법 및 개정안 전체 체계에서 그 범위와 성격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안 제305조의27에서 상정하는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산업입지법상 국가산업단지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2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은 현행 법령에 통

1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일된 정의가 없는 기술·정책 용어로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장래의 기술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소지가 있음.

따라서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의 범위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더라도, 법률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3항은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관계법에 감면 근거가 규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는바,

이 조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선언하더라도 별도의 세제 특례를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임.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은 없는 반면,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넷째, 제4항의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유예·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하에서도 제주자치도는 특정 분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새로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다시 선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례로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8. 의료·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4편 제4장)

(1)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제306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공공의료 인프라 등”의 범위를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시설·인력·사업 전반으로 정의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인프라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력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한 종합병원 유치 지원 수단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6조의2(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현행	개정안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자치도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 응급·분만·소아·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영역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⁷³⁾

제주지역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 제주자치도,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이 협력하여 “제주형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¹⁷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 인프라의 구성요소를 법문에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재정·인력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취지는 제주자치도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그로 인한 필수의료·응급의료·감염병 대응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¹⁷⁵⁾ 전북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에도

17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속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2024.3.14.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027>

174) 메디포뉴스, “제주형 필수의료 협력체계 전국 우수사례 공인”, 2025.11.20.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09016>

1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

비슷한 취지의 공공·필수의료 지원 특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관한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공공산후조리원, 필수의료 등 지역 필수 기반시설의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4월 9일 개정된 점을 들어, 제5항과 같이 별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으며, 기금의 용도·운영범위 등은 동 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특별시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필수·공공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합하면, 제306조의2는 제주지역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나, 제5항에 대해서는 상위 일반법과의 중복 및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제306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6조의3(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인력 공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¹⁷⁶⁾ 보건복지부의 「응급 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에는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정부가 시설·장비·인력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기관 용자·장비비·보조금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경비 우선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 필수·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 전북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¹⁷⁷⁾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것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법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7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제306조의4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6조의4(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공공의료재단과 같은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형태로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므로,¹⁷⁸⁾ 안 제306조의4가 공공의료재단 설치의 허용 여부를 새로이

17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창설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법률 차원에서 공공의료재단의 설치·운영 근거와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공공의료재단을 통한 광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제주특별법상의 정책과제로 보다 분명히 설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특례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행 일반법·조례 체계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4)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06조의5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국가가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6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현행	개정안
	<u>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u> 2. <u>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u> 3. <u>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u> 4. <u>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u>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인력 공급,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06조의5 각 호에서 열거한 지원 내용은 의료취약지·응급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항을 제주 응급의료취약지에 관하여 특별법상으로 재확인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34조에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입법 조치로 보임.

17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5)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제340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주자치도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과 기본사회180)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0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반영할 수 있다.

180) “기본사회”는 아직 개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나, 국회에 발의된 기본사회 기본법안 등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에너지 등 기본 생활영역에 대한 보편적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는 제주자치도를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실험 및 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도조례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본사회 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음.

한편, 기본사회 실현과 관련하여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¹⁸¹⁾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¹⁸²⁾ 등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하여 기본사회 정책의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 추진을 위한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¹⁸³⁾

이에 기본사회 실현은 장기적으로 일반법을 통하여 전국적·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영역인 한편,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험·검증하는 방안

181)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73호)

182) 최혁진의원·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6호)

1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반영할 수 있다.

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포괄적 특례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사회 기본법의 제정 동향, 기존 선도지역과의 정책 기능 및 역할 분담,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제주자치도 돌봄특구 지정(제340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특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0조의3(제주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제주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

현행	개정안
	를 설치한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통합돌봄의 범위를 영유아·아동까지 확장하고, 유치원·학교가 제공하는 돌봄과 지역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돌봄특구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¹⁸⁴⁾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돌봄특구 지정 및 특별회계 설치,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은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1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제주특별자치도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제340조의4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도지사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 시책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0조의4(제주특별자치도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청년기본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¹⁸⁵⁾ 제주자치도도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지역 정착 문제, 청년 유출 등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관광 프리미엄 프로젝트, 청년 취업 지원 특화패키지,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¹⁸⁶⁾

185)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제주형 청년 일자리”를 특별법상 정책과제로 명시하는 입법취지는 지역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¹⁸⁷⁾ 제주특별법에 유사 조항을 두는 것은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86) 헤드라인 제주, “제주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 프리미엄 프로젝트’ 추진”, 2025.3.13.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012>

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제340조의5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동작·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 관할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0조의5(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 등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 준수,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 제공,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인공지능 기반 수어 안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

고,¹⁸⁸⁾ 전북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포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정한 정책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공지능 약자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의 개별 사정이 아닌,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일반법 체계 내에서 통일적으로 정립·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임.

이러한 사항을 개별 지역 특별법에 분산·중복하여 규정하는 방식은, 디지털 포용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일반법에서 일관되게 설정하려는 최근 입법 흐름¹⁸⁹⁾과의 정합성, 일반 시·도 거주 장애인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의 제목은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 내용에는 인공지능 약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조문 제목에서 “교육”을

1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89) 뉴시스,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2024.12.2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6_000301146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2026.01.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863&tag=&nPage=1

삭제하거나 본문에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제340조의6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청년의 정주를 위하여 도지사가 청년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문화·집회시설 확충 등 지역 특화 청년정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유입·정착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0조의6(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청년 정주 여건 조성 의무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¹⁹⁰⁾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도 청년 일자리·주거·

1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 의무와 국가의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 시설 확충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 환경의 보전(제4편 제5장)

(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제376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물순환 시설¹⁹¹⁾ 등이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제주 관할구역을 물순환 촉진구역¹⁹²⁾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6조의2(물순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9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9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현행	개정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물순환촉진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등 물순환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종합계획 수립, 물순환 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뭄·홍수 등 물관리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물순환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또한 빗물이용시설 확충,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등 물순환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¹⁹³⁾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 및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 지역의 수자원 특성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구조의 물순환 촉진·지원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⁹⁴⁾ 제주특별법에 유사 조항을 두

193) 헤드라인제주, “제주, ‘빗물 재이용’ 기반시설 확충...‘지하수 대체수자원 확대’”, 2025.12.29.
<https://v.daum.net/v/20251229131757151>

1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것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물순환촉진법 제 6조에 따른 법정 요건 충족과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 후단의 “우선”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제4편 제6장)

(1)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제405조의2 신설)

개정안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제주자치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무상 임대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5조의2(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195)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5)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별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¹⁹⁶⁾를 참고한 것으로서,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하여 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은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 차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항에서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제2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개념의 정의·범위와 개념 간 상호 관계가 법률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책 대상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조문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에 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1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 토지의 이용 및 교통·항만 등의 개선(제4편 제7장)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제426조의3 신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제주자치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지사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특례,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 지원, 제주자치도 인재채용 비율 상향 적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6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제주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¹⁹⁷⁾ 수도권 소

¹⁹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재 공공기관의 제주자치도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1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할 때 제주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은 국가 차원의 종합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뿐 아니라 전북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시·도를 법률상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다른 일반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3항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법 제47조¹⁹⁸⁾에도 불구하고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 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1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¹⁹⁹⁾는 이미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사비용, 이주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제도와 충돌하기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

따라서 “제47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상위법과의 충돌 또는 예외를 전제하는 문언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제47조에 따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제4항은 혁신도시법 제29조의2²⁰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혁신도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등의 장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별도로 정하여”라는 문언만으로는 상향된 채용비율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채용비율 및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향 비율의 결정 주체와 기준·절차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2027년 추진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 예정인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제426조의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²⁰¹⁾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26조의4(공공기관 유치에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²⁰²⁾를 참고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경제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보임.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통하여 공공기관 이전 또는 신설 시 부지 확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내용상 제426조의3제2항과 중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426조의3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6조의4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같은 취지의 수의매각 특례를 두고 있는바, 양 조항은 모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수의매각 특례라는 점에서 규율대상과 수단이 유사함.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또는 제426조의3제2항에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더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426조의4가 안 제426조의3의 특례 내용과 중복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이 없어 해당 특례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제426조의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차원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교통·물류비, 의료·교육·돌봄 서비스, 기초생활 기반시설, 주거·이주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26조의5(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을

현행	개정안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물류비 지원 2. 의료·교육·돌봄 서비스 지원 3. 상수도·전력·통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4. 주거환경개선, 귀촌·귀어 촉진을 위한 주거·이주 지원 5. 그 밖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²⁰³⁾ 제주 관할구역 중에서는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및 추자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별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입법취지는 제주 관할 먼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특히 제주 관할 먼섬은 본섬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교통·의료·교육·물류 등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는바, 교통·물류비, 의료·교육·돌봄 서비스, 상수도·전력·통신 기반시설, 주거·이주 지원 등

203) 「울릉도·독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을 포괄하는 개정안의 사업 범위는 먼섬 주민 지원의 실질적 필요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²⁰⁴⁾ 제주특별법에 유사 조항을 두는 것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426조의6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주말시장 지원,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육성, 청년상인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6조의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

2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물류비 지원
2. 의료·교육·돌봄 서비스 지원
3. 상수도·전력·통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4. 주거환경개선, 귀촌·귀어 촉진을 위한 주거·이주 지원
5. 그 밖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 행정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전통시장 인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두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육성, 청년몰 및 청년상인 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주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국가 지원 가능성을 특별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제주특별법상 정책과제로 보다 분명히 설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구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²⁰⁵⁾ 제주특별법에 유사조향을 두는 것은 전통시장·상점가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간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제주자치도는 전통시장법 제6조제1항²⁰⁶⁾에 따라 시·도가 수립하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동 법 제6조제1항의 시·도별 지원계획으로 보도록 하는 제5항을 신설하여 두 계획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7조

2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제426조의7 신설)

개정안은 정부와 도지사가 시장 내 공동시설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사용료 등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6조의7(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공용창고·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 설치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은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특례는 이러한 공동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으로서, 상인·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국유지·공유지 사용료 감면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바,²⁰⁷⁾ 제주특별법에 유사 조항을 두는 것

2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은 전통시장 공동시설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 간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조문의 “시장”은 그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감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제427조의3 신설)

개정안은 사업구역이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변경·취소, 운송가맹·중개사업 관련 규제, 이용자 보호 및 요금·배차 관련 규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7조의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택시·렌터카 등 기존 여객운수체계와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서비스로서,²⁰⁸⁾ 제주자치도는 관광수요와 도민 교통수요가 복합된 구조, 렌터카·택시·플랫폼 간 이해관계, 도서·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격차 등 산업적·지리적 특수성이 큰 지역임.

이러한 점에서 사업구역이 제주에 한정된 플랫폼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허가·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교통 수요와 산업구조를 반영한 모빌리티 정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설계·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권한 이양 특례를

2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 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두고 있는바,²⁰⁹⁾ 제주특별법에 유사 조항을 두는 것은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 규제와 관련한 특별법 간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임.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제427조의4 신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운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안전운전 지원 장비 확충,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진흥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융자금 용도의 제한, 도지사의 감독 의무, 거짓·부정 수령 시 반환명령 및 채납처분에 준하는 회수 근거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27조의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u>정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u> <u>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u> <u>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u> <u>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u> <u>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u> <u>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u> <u>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u>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50조는 국가 및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²¹⁰⁾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플랫폼 인프라·안전 투자사업을 설계·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의 추가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플랫폼 운송과 기존 여객운수체계 전반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0조 역시 통합특별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보조·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자체의 감독 의무, 거짓·부정 수령 시 반환명령 및 체납처분 준용 회수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제주자치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재정지원 범위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보조·융자금 관리·환수 체계 측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제427조의5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75조제1항²¹¹⁾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7조의5(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 교통수요와 산업 구조, 관광·도민 수요의 특수성을 운임·요금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플랫폼 운임·요금은 택시 총량, 기존 택시요금 체계, 관광수요, 도민 생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1조도 통합특별시 관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는바, 제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두는 것은 플랫폼 운임·요금 규제와 관련하여 특별법 간 형평성 및 제도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9)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427조의6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에게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기준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르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7조의6(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주자치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해당 도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택시발전법 제16조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 또는 중도하차, 부당한 운임·요금 수취, 여객 합승 강요,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²⁾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8은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중도하차, 부당한 운임·요금 수취, 장시간 정차 또는 배회를 통한 여객 유치,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 거부,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자격증표 게시 및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

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음.²¹³⁾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문언상 세 유형의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를 포괄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만 연동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적용되는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8의 별도 준수사항 체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8을 따르도록 단서를 두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에도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2항 및 제94조제5항에 따른 위임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객

2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자동차법 제49조의8을 적용하고,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적용하도록 구분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제439조의2 신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 시설의 건설·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항만기본계획의 신속한 변경 및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9조의2(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항만지정·개발 특례 및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²¹⁴⁾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제주자치도에도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지역 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항만 지정·계획 변경 및 특화단지 조성 여부를 모두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도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2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11)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제439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회복, 그 밖의 항만 공공성 확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9조의3(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4·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항만법」은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을 구분하고,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²¹⁵⁾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에 관한 기본적인 지방책임 원칙은 유지하되, 지역균형발전이나 도서·벽지 주민 지원,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 재난 복구 등과 같이 국가적·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국가가 예외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제주와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지방관리항만이 단순한 지역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이동권 보장, 생활물류 유지, 재난 대응 및 국가 에너지정책 지원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례의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취지의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어,²¹⁶⁾ 지방특별법 간 정합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15) 「항만법」

제2조(정의)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4·16 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보칙(제5편)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67조)

안 제467조제2항은 동 개정안 제234조의2에 따라 설립이 추진 중인 제주과학기술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²¹⁷⁾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 략) <u><신 설></u>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u> <u>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u> <u>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이는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6조²¹⁸⁾를 준용한 것으로, 제주과학

217)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18)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술원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의 공공성을 반영하고
선행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